

# 광희시장 경비원이 뇌졸중 및 휴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제공 : 근로복지공단)

## 판결요지

· 망인이 1997. 7.경 “뇌졸중”에 이환된 이후 위 질환이 완치되기 이전에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뇌졸중” 및 “뇌경색”에 이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졸중 및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결국 망인은 위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참조).

서울행정법원 1999. 10. 26. 선고 99구12167

[유족급여등]

【당 사 자】원고 업○○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피고처분취소

## 판결이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광○○(이하 ‘망인’이라 함)

- (1) 1983. 10. 24. 소외 주식회사 광희시장(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경비원으로 입사
- (2) 1987. 6. 1. 경비주임으로 승진
- (3) 1997. 7. 14. “뇌졸중” 발병
- (4) 1997. 11. 18. “뇌경색 및 고혈압” 재발
- (5) 1998. 10. 31. 자택에서 요양 중 “대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사망

나. 원고,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1999. 2. 12. 이 사건 부지급 처분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가) 망인은 1988. 10. 24. 소외 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1987. 6. 1. 경비주임으로 승진한 이래 소외 회사의 경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경비원 및 청소원 관리, 상가건물내, 외부 순찰, 입주상인들의 전, 출입 상황 파악,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소방기구 등의 시설물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원래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었지만, 망인은 통상 08: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곤 하였다.

(나) 그런데, 1997. 2.경 광희시장 인근에 대형 상가가 잇따라 개점하게 됨에 따라 신설상가와와의 경쟁이 치열해졌을 뿐만 아니라, 신설 상가 부근에서 영업하던 노점상들이 야간에는 광희시장 부근으로 몰려와 영업을 하는 바람에 야간의 노점상 단속 및 주차 단속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경비책임자인 망인의 근무시간도 변경되어 1973. 3. 4.부터 1997. 5. 19.까지는 야간근무(근무시간 :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를 하게 되었다. 이후 1997. 5. 19.경 근무시간이 다시 변경됨으로써, 망인은 다시 주간근무에 임하게 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1950. 12. 17.생으로 사망 당시만 47세였는데, 1995. 8. 17. 실시된 건강진단 결과 혈압 수치가 180/120mmHg로 나타났는데, 1996. 6. 5.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도 혈압 수치가 190/130mmHg로 나타나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

(나) 망인은 1997. 7. 14. 12:00경 순찰을 마친 직후 경비실에서 갑자기 손과 발의 마비 증세를 보여 인천 부평구 소재 해광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뇌졸중”으로 진단 받았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그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1997. 8. 4.경 직장으로 복귀하여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하였는데, 위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에 다시 임하는 바람에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 하였다. 망인은 1997. 11. 18. 11:00경 소외 회사의 2층 중앙경비실 부근에서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인천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후 망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98. 4.경 소외 회사를 퇴직하여 자택에서 요양을 하였으나, 1998. 10. 31. 그 병세를 이기지 못한 채 “대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3) 뇌졸중 등

뇌졸중이란 뇌혈관 장애로 인하여 사지에 마비증세가 오거나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출혈에 의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뇌출혈이라 하고, 혈관 폐색에 의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뇌경색이라 한다. 뇌졸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비만, 과로, 스트레스, 과음, 흡연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뇌혈관질환 후유증이란 대뇌혈관질환에

속하는 원인 병태가 발생한 후 1년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을 뜻하는데, 뇌경색 역시 대뇌혈관질환 후유증의 원인 병태가 될 수 있다.

####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 25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

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망인은 1995년 및 1996년의 건강진단결과 이미 고혈압의 증세를 보여 평균인보다 그 건강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14년 이상 꾸준히 주간 근무만 하여 오다가 1997. 3.경 야간근무로, 1997. 5.경 주간 근무로 근무형태가 갑자기 변경됨에 따라 평생 동안 계속하여 오던 규칙적인 생활 리듬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1997. 7.경 “뇌졸중”에 이환된 이후 위 질환이 완치되기 이전에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뇌졸중” 및 “뇌경색”에 이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졸중 및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결국 망인은 위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